

TBT협정하의 탄소라벨링에 관한 충돌가능성 검토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A Review on Potential Conflicts of Carbon Labeling under the TBT Agreement

박지은(Ji-Eun Park)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제1저자)

이양기(Yang-Kee Lee)

부산대학교 무역학부(공동저자)

김영림(Young-Rim Kim)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TBT협정과 탄소라벨링 | 참고문헌 |
| III. 환경라벨링 관련 WTO 분쟁사례 | ABSTRACT |
| IV. TBT협정 상의 쟁점조항 검토 | |

국문초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환경라벨링이 증가하면서 비관세장벽이 형성됨에 따라 환경라벨링의 지위와 WTO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라벨링과 관련 국제규범인 TBT 협정을 먼저 살펴보고, 환경라벨링과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무역제한 조치 및 관련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TBT협정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정당한 목적 및 국제표준과 국제표준 설정기구에 대한 해석상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WTO 회원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탄소라벨링, 환경라벨링, TBT협정, 기술규정, 표준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3268)

I.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조치들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연히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설립 목적인 자유무역의 증진에 따라 국가들이 행하는 환경조치 또는 기후변화조치에 대해 WTO 규범을 적용하여 다양한 규제를 한다. 그러나 WTO협정은 회원국에게 다양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 WTO협정 중 하나를 위반하더라도, 그 정책이 WTO협정에서 인정하는 예외 중 하나에 포함되면 정당화될 수 있다.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이 환경 또는 기후변화의 목적이어야 하고, 자위적이거나 위장된 방식으로 무역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도 일방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¹⁾

UNFCCC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가입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과 조치로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자국의 사업들이 수입상품과의 경쟁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국경세 조정의 부과 또는 수입제한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환경정책인 배출권거래제, 에너지효율성표준, 탄소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의 일명 녹색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목적과 시행 범위에 따라 국제통상법상의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조치에서도 환경보호에 목적을 둔 비관세장벽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수입금지 또는 제한, 상품 내용물, 성능, 포장,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요금 및 세금, 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하여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환경요건이라고 하는데 탄소라벨링과 같은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ing) 요건 역시 환경요건의 일종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생활소비재에도 탄소배출량을 라

1) UNFCCC, Article 3.5.

The Parties should cooperate to promote a supportive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would lead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all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us enabling them better to address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Measures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including unilateral ones, sh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벨로 표시한다고 하여 탄소라벨링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각종 환경라벨링이 증가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탄소라벨링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WTO 체제 내에서 탄소라벨링의 지위와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의무화되면서 국제통상법을 중심으로 탄소라벨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로리(2011)는 탄소라벨링 제도의 국내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탄소라벨링과 WTO협정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생산공정 및 절차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을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정부조달협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소영(2011)은 TBT협정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하고 TBT협정 기술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상품의 동종성, 내국민대우원칙,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최근에는 탄소배출량의 측정과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공분야에서도 탄소라벨링과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민경 외(2019)는 재생에너지산업에 탄소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해외 탄소인증제도와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WTO하에서 무역과 환경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올해 초부터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라벨링과 같은 환경라벨링의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탄소라벨링의 활용이 점차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환경라벨링과 탄소라벨링의 정의를 살펴보고, 환경라벨링과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제4장에서 TBT협정 적용상의 쟁점조항을 제2조 제2항, 제4항을 중심으로 SPS협정과 비교하여 탄소라벨링제도에 대한 국제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TBT협정과 탄소라벨링

1. TBT협정

TBT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국내에 도입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에서 타국에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요건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TBT협정의 가장 주된 목적은 국내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회원국의 주권 행사와 국제무역 공동체에서의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이자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상품의 규격이나 표준(형태, 품질, 성능, 안전, 치수, 포장, 표시 등)을 제정 및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국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국제표준보다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거나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국제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TBT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정책이나 규정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표준을 설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규제를 할 수 없다. 라벨링 또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으로써 TBT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라벨링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중요한 WTO 규범이다.

2. 탄소라벨링

1991년 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환경라벨링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라벨링은 라벨링 붙여진 상품이 기능 및 경쟁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상품보다 친환경적으로 인증된 상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이다.²⁾ 탄소라벨링은 환경라벨의 일종으로, 제품의 원료 물질 채취부터 소재·부품·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 제품의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³⁾ 이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라벨, 탄소성적표지, 탄소감축(Carbon Reduction) 라벨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의 전과정에 야기될 수 있는 자연 생태계와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다중적인 측면의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탄소라벨링의 경우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2) 고태원, “환경표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운영 방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Special Issues GGGP 제47호, 2011, p.2.

3) Liu, T. et al., “A review of carbon labeling: Standards, implementation, and impact”,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 Vol.53, 2016, pp.69-70.

있다.⁴⁾

탄소라벨링제도는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탄소라벨링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탄소성적표지제도는 2009년 2월부터 도입하여 영국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량화하여 라벨을 부착한다.⁵⁾ 독일에서는 2008년부터 탄소라벨링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탄소발자국라벨이라는 용어는 영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계량화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발자국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 정보만 제공한다. 프랑스는 탄소발자국 라벨을 최초로 법제화한 국가로, 「Grenelle 2」법에서 탄소발자국 라벨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 국가와 일본, 대만,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탄소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⁶⁾

탄소라벨링은 정부 주도의 강제적 라벨링이거나 민간 주도의 자발적 라벨링의 형태를 가진다. 강제적 라벨링(compulsory or mandatory labeling)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화기관에서 제정한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상품의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강제적인 라벨링은 기술규정에 포함되고, TBT협정의 적용대상임으로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한 등의 의무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탄소라벨링은 자발적인 라벨링으로서 라벨링의 관련 요건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 없이 해당 상품의 관련 상업분야에서 선택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다. TBT협정상 표준에 해당하는 자발적 라벨링은 TBT협정 제4조와 부속서 3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자발적 라벨링이 TBT협정 부속서 3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가 상품 자체가 가진 특성과 관련되거나 상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과 관련되어야 한다.⁷⁾

3. 생산공정 및 절차

공정 및 생산방식은 생산에 이용되는 투입과 공정기술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⁸⁾ PPM은 환경적인 영향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에 중추적인 역할

4) 이유봉,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p.48.

5) 김경환, “국내의 탄소라벨링 현황과 전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Special Issues GGPP 제39호, 2011, pp.7-9.

6) Liu, T. et al., op.cit., p.73.

7) 이로리,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 관계”, 「국제경제법연구」, 제3권, 2005, p.215.

8) Perdakis N. and Read R., *The WTO and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05,

을 한다. 상품의 생산방법에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PPM은 환경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적 PPM의 적용은 PPM은 수출업자가 해외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어렵게 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또한 환경적 관습과 법률에 대해 수입국의 환경적 관행과 법률에 대해 수출국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PPM은 상품의 생산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제품 관련 PPM(Product PPM, 이하 PR-PPM)과 제품 무관한 PPM(Non-Products PPM, 이하 NPR-PPM)으로 구분된다. 상품 기준 분류의 주요 쟁점은 공정 및 생산방식이 최종 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PPM이 최종 상품의 사용용도, 조작(handling) 또는 폐기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경우를 PR-PPM이라 한다. 그러나 PPM에도 불구하고 최종 상품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 상품에 대한 다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NPR-PPM이라고 한다.⁹⁾ 탄소라벨링의 경우, 상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NPR-PPM에 해당한다. PPM은 여러 협정에 의해 규정되는데, WTO협정은 일반적으로 PR-PPM과 NPR-PPM을 구분하고 있다. PPM과 관련된 기술규정, 표준, 라벨은 TBT협정에 적용되고, TBT협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PPM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또는 GAT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Ⅲ. 환경라벨링 관련 WTO 분쟁사례

탄소라벨링은 도입되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탄소라벨링은 대부분 자발적 표시 즉 표준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탄소라벨 자체에 대한 관련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탄소라벨링을 활용하는 범위가 생활소비재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련 분쟁을 검토하여 WTO 체제 하에서 탄소라벨링에 관한 쟁점조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p.239.

9) Monkelbaan, J., "Climate change, labell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Are they (dis)harmony?", *Journal of World Trade Studies*, Vol.5 No.2, 2015, pp.54-55.

1. US-Tuna II¹⁰⁾

1) 사건 개요

1988년 미국은 돌고래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참치 조업을 제한하고 참치제품의 시장규제를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돌고래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정보법을 도입하고 참치제품에 ‘돌고래 안전’ 라벨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동 정책은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의 국내정책이었지만 멕시코와 통상분쟁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돌고래 안전제도의 강화와 시장규제로 인해 멕시코산 참치제품의 수출에 타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멕시코산 제품이 수입 금지되었고 이는 사실상 시장접근의 차단을 의미하였다. 미국의 돌고래 안전제도는 멕시코에 의해 GATT 체제에서 1회, WTO 체제에서 1회 소송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을 도입하고, 1988년 돌고래 안전보장을 위한 참치어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 법은 구체적인 참치 조업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강행규정이며, GATT의 규범과 질서를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양 당사국의 입장에 의해, 멕시코 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패널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이후 미국은 돌고래안전 라벨의 표준을 재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DPC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돌고래안전 라벨을 통합하고 표준화하였다. 법적으로는 멕시코산 참치제품이 미국 내에 판매될 수 있으나, 미국의 유통업체에서 라벨이 없는 참치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미국 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8년 10월 멕시코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2) 쟁점 및 판정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TBT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4조를 위반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돌고래안전라벨은 미국의 자국산, 수입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기적이고 심각한 돌고래 사상(死傷)의 유무를 바탕으로 하여 라벨 사용여부가 결정된다.

10) United State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US-Tuna II), WT/DS381

멕시코는 미국의 돌고래안전 라벨이 멕시코의 참치제품에 덜 유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패널은 TBT협정 제2조 1항의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멕시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에 따르면 미국의 해당 조치는 DPCIA보다 앞서 있었고, 멕시코에서는 돌고래안전 라벨을 준수하기 위해 조업 관행을 변경할 수 있었다.¹¹⁾ 이러한 이유로, 패널은 멕시코 참치 제품에게 조치의 영향이 미치긴 하였으나, 이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이 없는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멕시코 어선의 선택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판정하였다.¹²⁾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과를 뒤집고 해당 조치가 경쟁조건을 바꾸어 멕시코산 참치제품에 대해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보았고, TBT협정 제2.1조를 위반하는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¹³⁾

패널은 미국의 해당 조치가 TBT협정 제2조 2항을 위반한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의 「국제돌고래보호협정(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 AIDCP)」에 의해 제정된 돌고래 안전라벨의 사용을 허용하면 DPCIA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그러나 상소절차에서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보다 대안 조치가 덜 무역제한적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TBT협정 제2조 4항과 관련하여, 패널은 AIDCP의 돌고래안전에 대한 정의가 관련 국제표준이며, AIDCP가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판정하였다.¹⁵⁾ 그러나 상소기구는 국제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며, 국제표준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표준이라고 설명하였다.¹⁶⁾ AIDCP는 모든 WTO 회원국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BT협정에 따른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¹⁷⁾

2. US-COOL¹⁸⁾

1) 사건 개요

육류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요건(Country of Origin Labelling, 이하 COOL)은

11) Panel Report, US-Tuna II, WT/DS381/R, paras. 7.327-7.328.

12) Ibid, para. 7.378.

13) Appellate Body Report, US-Tuna II, WT/DS381/AB/R, paras. 297-284.

14) Panel Report, US-Tuna II, WT/DS381/R, paras. 7.577-7.620.

15) Ibid, paras. 7.692-7.707.

16) Appellate Body Report, US-Tuna II, WT/DS381/AB/R, paras. 359-362.

17) Ibid, paras. 397-398.

18)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US-COOL), WT/DS384

1946년 농산물유통법이 2008년 개정된 것과 그 이행규칙인 2009년 최종규칙(2009 Final Rule)에 의해 규제되었다. COOL조치란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에게 판매 시점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조치는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자에게도 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급업자는 제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절차에 걸쳐 모든 관련된 자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판매자가 육류제품에 정확한 원산지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류제품으로 가공되는 원료의 출생, 사육, 도축 단계에 의해 원산지 라벨을 A, B, C, D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국 내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만을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자가 COOL조치에 부합하는 원산지의 기록, 관리, 표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에 따라 육류 및 가축을 분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육류에 부착되는 라벨에 원산지 표기가 많아질수록 제품의 공급 및 유통 전반에 걸친 분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서 비육(fattening) 또는 도축되는 소와 돼지의 주요 공급국으로, 미국의 COOL조치가 자국의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였다.¹⁹⁾

2008년 12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COOL 조치에 대하여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COOL 관련 규제를 본래 제정된 대로 2009년 3월 16일에 최종규칙이 발효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2009년 10월 9일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며 미국의 COOL조치가 TBT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 및 판정

패널은 COOL조치가 기술규정인지, TBT협정 제2조 1항인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그 결과 COOL조치의 규정은 기술규정이며, 일부 조항이 TBT협정 제2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²⁰⁾ 또한 TBT협정 제2조 2항에 합치하는지 즉 무역제한적인 조치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무역제한적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특정적이지 않고 광범위하다고 하면서, 어떤 조치가 무역제한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치의 실질적인 무역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상품이 가지는 유효한 경쟁의 기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²¹⁾

19) Jerenas R. and Greene, J. L., *Country-of-Origin Labeling for Foods and the WTO Trade Dispute on Meat Label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2014, p.2.

20) Panel Report, US-COOL, paras. 7.196-7.548.

상소기구는 먼저 미국의 COOL 조치의 목적에 대해 검토하였다.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기술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기술규정의 내용을 담은 문언(text), 채택과정(legislative history), 구조(structure) 및 적용(operation)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야 하고, 문제된 기술규정을 도입한 회원국이 취한 조치의 목적은 고려대상 중 하나라고 하였다.²²⁾ 미국의 주장에 기초하여 해당 조치의 목적을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였고, 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패널의 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라벨 A는 COOL조치가 가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조치이지만 라벨 B와 C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다고 결론 내렸다.²³⁾

3. US-Clove Cigarettes²⁴⁾

1) 사건 개요

2009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자국의 청소년 흡연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커피향, 과일향, 클로브향 등 향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멘톨향 담배는 판매금지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동년 9월 22일 시행된 미국 「가족흡연 방지 및 담배제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FSPTCA)」 제907조 제(a)(1)(A)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클로브향 담배의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 내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발생한 손해의 추정액은 약 2000만 달러이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국민 약 60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4월,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다고 WTO에 제소하였다.

2) 쟁점 및 판정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클로브향 담배 판매금지 조치가 차별적 행위이며 미성년자 흡연을 증가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멘톨향 담배가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은 미국 FDA가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면서 인도네시아산 향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여 자국 상품에 대해 차별을 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네시

21) Panel Report, US-COOL, para. 7.575.

22) Appellate Body Report, US-COOL, para. 395.

23) Ibid, para. 47.

24)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US-Clove Cigarettes), WT/DS406

아의 주장에 대하여 향담배의 판매 및 수입금지 조치가 청소년 흡연을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동 조치의 목적이 자국민 보호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 조치가 인도네시아산 담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클로브향, 과일향 담배를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는 강제적인 의무 형태의 단어가 사용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 있으므로 강제성이 있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해당 조치는 TBT협정이 적용되는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패널은 멘톨향 담배와 클로브향 담배가 동종상품(like products)에 해당하고, 클로브향 뿐만 아니라 멘톨향 또한 청소년 흡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TBT협정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패널의 검토방식이 피해만 고려하고 차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 시장에서의 클로브향 담배의 경쟁조건을 확실히 변경시키는 경우에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하며, 미국의 해당 조치 목적, 방식, 구조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TBT협정 제2조 1항의 위반을 최종판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클로브향 담배의 수입금지 자체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훨씬 더 무역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TBT협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먼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조치가 실제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호수준의 목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향담배 수입금지가 그러한 보호수준 보다 지나친 정도의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²⁵⁾ 즉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주장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less trade-restrictive measures)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로브향 담배 수입금지에 대한 대체 수단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며, 클로브향 담배 수입금지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의 조치는 TBT협정 제2조 제2항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하고, 당사국들도 이러한 패널의 해석과 판정에 항소하지 않았다.

25) Panel Report, US-Clove cigarettes, paras. 7.373-7.374.

IV. TBT협정 상의 쟁점조항 검토

현재 WTO 체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하나, 국제분쟁의 발생 시에 당사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WTO에서 이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WTO에서도 DDA 협상부터 환경과 관련된 의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5일 WTO 5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가 출범하여 무역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의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탄소라벨링에 대한 TBT협정의 쟁점을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가능성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다. 제3장에서 다룬 사례들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TBT협정 제2조로, 본 장에서는 제2조 제2항과 제2조 제4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WTO에서 환경과 관련된 협정은 SPS협정이 있고, 환경 분야 내에서 기술규정 및 표준이 이슈로 떠오르며 TBT협정 또한 환경 관련 주요 규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SPS협정과 TBT협정을 비교하여 TBT협정의 쟁점조항을 검토하였다.

1. 정당한 목적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앞선 TBT협정과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탄소라벨링의 도입에서 TBT협정 제2조 제2항에 주목해야하는 것은 TBT협정 제2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 수행’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TBT협정 제2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목적을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탄소라벨링의 적용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김민정·유지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TBT 분쟁의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호 목적이 전체 분쟁 중 3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뒤를 소비자정보 제공과 라벨링 목적,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목적, 환경보호 목적 등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TBT 협정과 관련한 분쟁 중 기술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의 대다수가 제2조 제2항에 언급되어 있는 ‘정당한 목적’과 관련한 사항이며, 그 자체가 분쟁의 쟁점사항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그 자체가 정당한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 전달법, 표시규격, 표시 인증제도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목적 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보호무역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⁶⁾

탄소라벨링에 대한 논의는 제품의 친환경성 표시 여부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²⁷⁾ 탄소라벨링의 경우 최근에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국제분쟁으로 발전된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²⁸⁾ 따라서 연관성이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판례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조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US-Tuna II, US-COOL, US-Clove Cigarettes 사건은 특히 TBT협정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TBT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²⁹⁾

US-Tuna II와 US-COOL 사건에서 해당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그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조치가 시장에서 유해하게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그 과정에서 조치가 공정하였는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 판단하였다.³⁰⁾ US-Clove Cigarettes 사건의 경우 패널은 미국이 미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조치가 아님을 판결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는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TBT협정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규정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무역을 제한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역제한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지만, TBT협정은 분석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에 SPS협정의 경우 제5조에서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제6항에서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³¹⁾ 특히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

26) 김민정·유지영,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 『통상법률』, (130),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6, p.79.

27) 이소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 『국제법학회논총』, 56(4), 대한국제법학회, 2011, p.176.

28) 상민정·한성애·박선효,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도의 개발 방향성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규범 및 환경라벨링 관련 무역 분쟁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제39권 제6호, 2019, p.9.

29) 양정미, 김선옥, “WTO/TBT협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p.183.

30)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7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p.504-505.

31) SPS Agreement Article 5.6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of Article 3, whe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Members shall ensure that such measures are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ir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하는 대안조치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는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 조치’가 있어야 하고, 대안조치가 ‘적정보호수준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러한 대안 조치가 실시 중인 조치와 비교하여 ‘무역제한 효과가 현저히 낮아야’ 하는데, 이때 무역제한 효과가 낮다는 것은 시장접근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³²⁾

SPS 협정 제5조 제6항은 분쟁사례에서 인용되는 횡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TBT협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횡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의 조치가 TBT 협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미의 무역제한적인 조치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는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즉 탄소라벨링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에 대한 조치로 부속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무역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 정당한 목적의 수행을 위한 조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표준 설정기구의 명확화

탄소라벨링은 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된다. 탄소라벨링에 대한 국제표준은 PAS2050, ISO 14067, GHG 프로토콜(protocol)이 있다. 이들은 각각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WRI(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설정하고 있다.³³⁾ 라벨링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라벨링은 주로 표준으로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벨링이 강제적이지 않은 표준이라 하더라도,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신뢰성, 안전,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크게 영향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라벨링 요건인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TBT협정은 WTO 이외의 기구에서 제정된 법적 근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에 있어, 다시 말해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기구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US-Tuna II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가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표준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

Footnote 3. For purposes of paragraph 6 of Article 5, a measure is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unless there is another measure, reasonably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at achieves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nd is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32) 전정기 외,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2, pp.63-64.

33)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 제159호 2021.4.12. available from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159/pdf/issue_262_02_all.pdf

런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정의와 이를 설정하는 기구의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TBT협정 부속서 1.2는 국제표준을 인정된 기구(recognized body)에 의해 승인되고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라고 정의하면서, 주석으로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문서도 TBT 목적을 위한 표준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한다.³⁴⁾ EC-Sardines에서 상소기구는 합의에 의해 채택된 표준만이 TBT협정 제2조 제4항의 TBT 목적과 관련 있다는 EU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는 TBT협정 부속서 1.2의 주석에 따라 국제표준화공동체(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mmunity)에 의해 합의된 표준뿐만 아니라 합의에 기초하지 않아도 국제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그렇다면 부속서 1.2의 인정된 기구와 국제표준화공동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TBT협정에서는 인정된 기구와 국제표준화공동체에 대한 해석기준 또는 예시가 없고, 분쟁이 발생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안별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US-Tuna II 사건의 상소기구는 WTO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기구를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판정하였다. 반면에 SPS협정은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내용이 제3조 제3항, 제5조 제7항 및 부속서 1에 나타나 있다. 부속서 1(3)의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는 국제표준 설정기구의 예시로 Codex Alimentarius,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 의해서 제정한 표준, 지침 및 권고라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TBT협정에서도 SPS협정과 같이 국제표준 설정기구에 대한 명시적인 예시가 포함된 규정이 필요하다. 분쟁별로 관련 국제표준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TBT협정 내에서 국제표준 설정기구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기구에서 설정한 표준이 관련 국제표준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V. 결론

산업화가 진행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가 진행되

34) TBT Agreement Annex 1.2. Standard

Document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product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not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35) Delimatsis, P.,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gnised standardisation bodies" under the TBT Agreement, TILEC Discussion Paper No. 2014-031, 2014, pp.18-19.

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하는 탄소라벨링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국의 환경조치,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환경라벨링 또는 탄소라벨링은 대부분 표준으로서 TBT협정의 적용대상이다. 이러한 표준에 의해서도 무역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

표준의 준수는 본래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기술규정으로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안전과 환경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때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 요건이 특정 생산방법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또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TBT협정의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재 탄소라벨링 관련 대표적인 국제표준으로써 ISO에서 권고하고 있는 ISO 14067은 제품의 전과정평가를 기반으로 탄소라벨 제품에 대한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품의 사회 경제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다룬 TBT협정 관련 분쟁사례를 통하여, 라벨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쟁의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검토한 분쟁사례에서는 TBT협정 제2조에 대한 당사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리한 무역제한 조치 및 국제표준과 국제표준 설정기구에 대한 해석상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WTO 회원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쟁점 이외에도, PPM과 관련된 문제들도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PR-PPM과 달리 NPR-PPM은 문제가 될 수 있다. NPR-PPM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영역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NPR-PPM은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라벨링을 기반으로 한다. NPR-PPM의 범주의 특징 때문에 상품의 공정 및 생산 방식에 따른 추적 가능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저탄소 경제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정부 또는 기업의 과도한 환경적 조치는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을 추구하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비추어볼 때,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치의 시행에서도 국제통상 규범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에서도 무역과 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통한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TESSD의 출범으로 무역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무역을 주요 의제로 하는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WTO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하에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TBT협정의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태원, “환경표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운영 방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Special Issues GGGP 제47호, 2011.
- 김민정,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통상법률』, 제111호, 2013.
- 김민정·유지영,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 『통상법률』, 제130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6.
- 류한열·성열용·김재덕,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FTA TBT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분석』, 2016.
- 박지은·이양기, “에너지거래에 대한 WTO 서비스규범의 도입과 주요 쟁점 - EU-Energy Package 패 널보고서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 상민경·한성애·박선효,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도의 개발 방향성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규범 및 환경라벨링 관련 무역 분쟁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제39권 제6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9.
- 양정미·김선옥, “WTO/TBT협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7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이로리,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국제경제법연구』, 제3권, 2005.
- 이로리,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통상법률』, 제100권,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1.
- 이소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대한국제법학회, 2011.
- 이유봉, 「탄소성적표시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윤성종,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 전정기·이성형·이대풍,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2.
- 홍성규, “WTO체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 Delimatsis, P.,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gnised standardisation bodies*” under the *TBT Agreement*, TILEC Discussion Paper No. 2014-031, 2014.

- Jerenas R. and Greene, J. L., *Country-of-Origin Labeling for Foods and the WTO Trade Dispute on Meat Label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2014.
- Liu, T., Wang, Q. and Su, B., “A review of carbon labeling: Standards, implementation, and impact”,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 Vol.53, 2016.
- Monkelbaan, J., “Climate change, labell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Are they (dis)harmony?”, *Journal of World Trade Studies*, Vol.5 No.2, 2015.
- Talus, K.,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Energy Law*,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WTO Doc. WT/DS384/AB/R and WT/DS386/AB/R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WTO Doc. WT/DS406/AB/R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O Doc. WT/DS381/AB/R
- Panel Report,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WTO Doc. WT/DS384/R
-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WTO Doc. WT/DS406/R
-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O Doc. WT/DS381/R
-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
-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159/pdf/issue_262_02_all.pdf

ABSTRACT

A Review on Potential Conflicts of Carbon Labeling under the TBT Agreement*

Ji-Eun Park^{**} · Yang-Kee Lee^{***} · Young-Rim Kim^{****}

As a non-tariff barrier is being formed as various environmental labeling increases as a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abeling and the application of WTO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carbon labeling and TBT agreements as related international regulation. It also analyzed cases of WTO disputes involving environmental labeling.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the TBT Agreement focusing on unnecessary trade restrictions and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It can prevent arbitrary interpretation of WTO member states by preparing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for legitimate purpos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setting organizations. The probability of future disputes should be reduced by improv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BT Agreement.

Key Words : Carbon labeling, Eco labeling, TBT Agreement,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8103268)

** First Author, Researcher, Institut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Institut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